



##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24. 6. 1.] [대통령령 제34449호, 2024. 4. 23., 타법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 (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) 02-3771-8648

문화체육관광부 (문화정책과-문화이용권) 044-203-2516

문화체육관광부 (시각예술디자인과-건축물 미술작품) 044-203-2758

문화체육관광부 (예술정책과-문예기금, 한국문화예술위원회) 044-203-2714

문화체육관광부 (예술정책과-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육성) 044-203-2712

문화체육관광부 (문화기반과) 044-203-2649

문화체육관광부 (예술정책과-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) 044-203-2713

###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

**제23조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)**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.

1. 「공연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
2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
-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·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.
-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·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  1. 공연·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(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
  2. 공연·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
    - 가. 장애예술인
    - 나.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·단체
  3. 장애예술인이 공연·전시 등에 감독,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
  4. 공연·전시 등의 제작, 기획,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-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·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19.]

**부칙** <제34492호, 2024. 5. 7.>(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**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5호다목 중 “무형문화재를”을 “무형유산을”로 한다.

⑦부터 ⑮까지 생략

**제3조 생략**